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2명, 7급 2명, 8급 8명, 9급 8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6급 5명, 7급 7명, 8급 10명), 가석방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 수용자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1개 과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증원하며, 국립법무병원 의무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 정원 3명(4급 3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장”을 “약물중독재활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약물중독재활센터”로 한다.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3명”을 “23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6 중 총계 “778”을 “772”로 하고, 일반직 계 “741”을 “7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1”을 “72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882”를 “22,9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863”을 “22,89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57”을 “22,685”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	0명
2)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1개 과	12명

별표 8 제2호나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 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 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 병원장 소속하에 <u>약물중독재활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 를 둔 다.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 ----- ----- ---- <u>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 터</u> ----- --.
② <u>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u>	② <u>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 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 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 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③ <u>센터장은</u>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 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u>약물중독재활센터장</u> ----- ----- ----- ---.
④ <u>센터에</u>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	④ <u>약물중독재활센터</u> ----- -----.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② -----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

--- 230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778</u>	<u>772</u>	-6
•	•	•	
•	•	•	
일반직 계	<u>741</u>	<u>735</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31</u>	<u>725</u>	-6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22,882</u>	<u>22,910</u>	+28
일반직 계	<u>22,863</u>	<u>22,891</u>	+28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657</u>	<u>22,685</u>	+28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